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7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5.2.3일 공포)됨에 따라 안전시설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장정비사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개정 법률(「주택법 시행령」, '14.12.23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물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제2호다목, 안 같은 조제4항제1호, 제2호)

법률에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안전시설물을 설치

- ·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 타법개정(「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관련 조문 정비(안 제25조)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버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5년 6월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입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시장 상권과 (전화 : 042-481-4561, Fax : 042-472-7935)

대통령령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을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설치·개량"을 "설치·개량·보수"로 한다.

제25조 중 "제15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제15조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지원대상 등) ① (생 략)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 하는 공동시설 하는 공동시설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전주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 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 설치·개량 라. ~ 마. (현행과 같음) 라. ~ 마. (생 략)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 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설치·개량·보수-----후 설치·개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곳

| 현 행 | 개 정 안 |
|-----------------------------|--------------------|
| 2.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 | 2 |
| 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 |
|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 |
| 등을 <u>설치·개량</u> 할 필요가 있다고 | <u>설치·개량·보수</u> |
| 인정한 곳 | |
|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
| 승인대상 제외) 법제39조제2항에서 | 승인대상 제외)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 |
| 족할 때"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 |
|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 |
|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시 | |
| 행령」 <u>제15</u> 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 <u>제15조제2항제1호의</u> |
|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 요건을 충족하는 때 |